

제34회 경상북도의회제차장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2023. 6. 19.(월)

경상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건 설 소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실

경상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순범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박순범·박승직·한창화·박창석·허 복·백순창·이우청·남진복
정경민·최병준·도기욱·김희수·이형식·박용선·남영숙·김대일
권광택·황명강·황두영 의원(19명).

2. 제안이유

-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원천적으로 저감하고 화재예방 안전관리에 기여코자 함

3. 주요내용

-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 추진 (안 제3조)
-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설치비용 지원 신청시 필요한 서류에 관해 규정함(안 제6조)
- 설치비용을 우선 지원 할 수 있는 소방대상물에 관해 규정함
(안 제7조)
- 소방설비등의 설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4. 관련법령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18조, 제19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소방기본법」 제2조
- 「지방자치법」 제13조

5. 관련부서 협의

- 법제심사: 불임
- 규제심사: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부패영향평가: 불임
- 해당부서 검토의견: 불임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불임

6. 입법예고 결과

- 예고방법: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 공고
- 예고기간: 2023. 6. 2. ~ 6. 7.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54호
- 의견제출: 의견 없음

7. 검토의견

가. 조례제정 필요성

- 시장, 공장, 창고 밀집지역 등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화재 발생시 피해 규모가 크고 안전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화재 예방 강화를 위한 집중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며,
- 도내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 및 안전설비의 설치를 지원하고, 소방설비 등 설치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화재안전을 강화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조례안의 주요 내용

- 제1조,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 제3조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한 화재예방강화지구¹⁾에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홍보, 안내, 훈련 및 교육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5.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6.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8.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4조는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설비 및 안전설비의 설치와 보수·보강을 위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설비 등의 지원범위를 별표*로 규정함

* 별표의 소방설비 등의 종류는 소방·전기·가스·건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과 성능이 검증된 설비로 정함

-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는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지원 대상, 지원 신청, 지원 결정, 지원 방법등을 구체화하였으며, 화재발생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관리 취약자가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는 우선 지원토록 규정함

다. 종합의견

- 금번 「경상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장지역, 공장·창고 밀집지역,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밀집지역 등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 발생 시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한 화재안전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 현재 경북도내 6곳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관리 중에 있으나, 향후 점차 확대 지정될 경우 화재 사전예방과 선제적으로 화재에 대응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사업 수행 및 소방 설비 등 설치지원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구체적으로 대비하고,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의 제정이 필요하고,

-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제정 취지와 내용 등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지원 할 수 있는 소방설비의 범위가 넓고 종류가 다양하므로 지원대상과 대상물별로 필요한 소방시설이 달라 수반되는 비용의 편차가 클것으로 예상되므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시 소방설비 범위,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1

경상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 현황

□ 경상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현황 출처 : 소방본부

대상명	위치	지정사유	지정연월	취약장소
포항 죽도시장	포항시 북구	시장지역	1977.09.30	다수점포 연소확대 우려
경주 성동시장	경주시 성동동	시장지역	1933.01.14	다수점포 연소확대 우려
포항 대흥동 적선지대	포항시 북구	소방서장 인정지역	2005.05.20	각 점포 등
경주 양동마을	경주시 강동면	목조건물 밀집지역	2011.05.13	문화재(목조건물 밀집지역)
안동 하회마을	안동시 풍천면	목조건물 밀집지역	2011.05.13	문화재(목조건물 밀집지역)
성주 한개마을	성주권 월항면	목조건물 밀집지역	2014.02.01	문화재(목조건물 밀집지역)

□ 경상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 화재발생 현황 출처 : 소방본부, 2020.~2022

대상명	화재(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비고
죽도시장	2022.12.01	0	2,446	
	2022.01.13	0	30	점포(복만상회)
	2021.10.09	0	36	점포(싱싱야채)
	2021.03.02	0	1,940	본동상회
성동시장	2020.12.16	0	1,306	대림참가자미희집
	2020.07.20	0	539	맛있는 떡집
하회마을	2022.11.04	0	23,956	강** 주택화재